

 신안산대학교	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	규정번호	4-1-6
		제정일자	2011.11.09
		개정일자	2021.02.26.
		책임부서/팀·계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 11조에 의한 대학 등록금 심의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,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신안산대학교 등록금 심의 위원회(이하 “심의 위원회”라 한다) 라 칭한다.

제3조(기능 및 권한) ①심의 위원회는 대학 등록금(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)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②위원회는 대학에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-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 : 학교 예결산서, 세부명세서 등 회계관련 자료, 교원 총원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자료, 대학 실정에 맞는 등록금 책정요인(사회적 지표, 타 학교 수준 자료 등)을 포함한다.

제4조(구성) 심의 위원회는 교직원(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), 학생, 관련 전문가 (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외)를 대표할 수 있는 7인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정수)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제5조(자격 및 정수) ① 심의 위원회는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그 자격기준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 1인 : 보직교원 및 전임교원 이상
2. 직원 4인 : 직원 <2021.2.26. 개정>
3. 학생 3인 : 재학생 대표
4. 관련 전문가(회계전문가, 교육전문가, 교육관련 시민단체 실무자 등) 1인
5. 동문 1인 : 동문대표

제6조(임기) 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 심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학생 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. (단, 학생임원은 당연직 위원직으로 참여한다.)

제7조(위원장 등) ①심의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 위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심의 위원 임기와 같다.

③위원장은 심의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제8조(회의소집) ①심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으로 하며 다음 연도 예산안 마련 시에 개최한다.

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 또는 재적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위원장은 심의 위원회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심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개의 및 의결정족수) ①심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

②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의록) ①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3인이 기명날인하고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보존하며 이를 공개한다.

③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1항 별표의 공공기록물에 준하여 5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당해 대학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사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위원은 심의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학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
제12조(재정) ① 학교의 장은 심의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심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간사) ①심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제 1항의 간사는 신안산대학교 직원으로 한다.

③간사는 심의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.

제14조(규정의 개정) 이규정의 개정은 심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학교의 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조(준용 및 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법인정관을 준용하되, 이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- 부 칙 -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고등교육법 개정 공포-2011.9. 15 관련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